

생물다양성 민간 참여 가이드라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힘을 기울이라면~

(제 1 판)

개요

1. 서론

‘민간참여’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조합은 얼핏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006년에 개최된 제 8 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COP8)에서는 민간 참여에 관한 결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은 유엔의 주창에 의해 2005년에 작성된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가 성과를 거둔데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행복한 생활은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과거 50년 동안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주체의 노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이란 한마디로 말해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은 물, 산소, 음식, 섬유, 목재, 연료, 의약품, 안정된 기후, 자연재해 방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경관, 자연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신기술 등, 다양한 자연의 혜택(=생태계 서비스)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국토 면적의 무려 5분의 1에 달하는 삼림이 매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수백 년간에 걸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과거의 1,000 배로 빨라지는 등,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일본인은 음식의 약 60%, 목재의 약 80%를 수입하고 있는 등, 해외의 자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급속하고 대대적인 손실이 진행되면 우리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가이드라인의 취지

그렇지만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대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사업자에 의한 노력이나 생물다양성과의 연관성은 사업자의 업태, 규모 등에 따라 실로 복잡다기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폭넓은 분야의 사업자(*)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인식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란 기업, 조합, 그 밖의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등을 가리킵니다.

3. 민간참여와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생물자원은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생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속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는 ‘자연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사업자, 민간단체, 지방공공단체, 국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연계를 맺어가면서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널리 사회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물자원을 다루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 활동의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반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공생사회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2006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COP8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의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낮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 (1) 생물다양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는 민간 사업자가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2) 정치 및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민간 사업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널리 확산시키는 열쇠가 된다,
- (3) 민간 사업자에게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보다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나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등,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007 년, 2008 년의 G8 환경장관회의에서도 생물다양성은 중요한 의제가 되었으며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정책 강화,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008 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 9 회 당사국 회의나 2010 년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되는 제 10 회 당사국 회의에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가?

(1) 자신의 사업과 생물다양성 간의 관계를 파악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밝히기 위해 우선 자신의 사업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①어떤 생물다양성의 혜택에 의존해 성립되고 있는지, 또 ②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2) 필요한 노력의 검토와 실시

자신의 사업과 생물다양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①생물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미래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②생물다양성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중요한지를 검토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접근방식을 따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노력을 기울이며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체제 정비

노력을 기울이며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체제를 필요에 따라 정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4) 협력업체와 힘을 합하는 등 활동 범위의 순차적 확대 검토

가능하다면 협력업체 등과 힘을 합하면서 노력하는 등, 활동 범위의 확대도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접근방식

(1)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혹은 최소화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방적 및 순응적 노력 실시

생물다양성의 유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업 실시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대책을 미루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예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예방적 노력).

또한 사업실시 중에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계획을 재검토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순응적 노력).

(3) 장기적 관점 유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면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은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표면화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6. 추진 시의 관점

새로운 노력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다양성은 특정 지역에 밀착된 가치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한다.

- 광역 혹은 범지구적인 시야를 갖는다.
- NGO/NPO, 지역주민, 연구자, 지방공공단체, 국가 등 다양한 관련 주체와 연계하면서 폭넓은 지식과 견문, 수단을 활용한다.
-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배려한다.
- 지구온난화 대책 등 기타 환경대책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각 사업자가 협력하면서 노력을 기울인다.
-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 각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맞는 노력을 기울인다.

7. 가이드라인의 구성

- 제 I 편 현상인식의 공유
- 제 II 편 지침
- 참고편 실천을 위한 힌트

8. 가이드라인의 작성 과정

이 가이드라인은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검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그 밖의 의견교환, 공중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9. 맺음말

오늘날 일본에서는 기업 등에 의한 민간활동은 단순한 영리활동의 범주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사회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기업 등의 민간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료 조달을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원료 조달과 관련된 위험이 줄어들어 경영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자원전략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자원이 한정된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장되게 말한다면 향후 100년, 200년 후 사회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검토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 ‘생물다양성’이 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 경제의 변혁은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국가, 지방공공단체, NGO/NPO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물다양성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아마도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과 건전하고 안정된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다름아닌 우리들 현 세대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각 사업자가 향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과 밀접히 관련된 범 지구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0일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생물다양성 민간 참여 가이드라인의 개요

◆ 생명과 생활을 지탱하는 생물다양성

지구가 생겨난 이래,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생겨났으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 생물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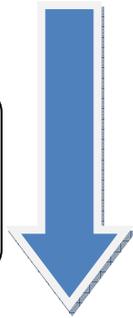
이 생물다양성이 가져다주는 혜택(생태계 서비스)에 의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의 혜택 예 >

쌀, 야채, 목재, 생선, 신선한 물 등을 제공해 준다

산, 강, 바다 등의 경관과 그 토지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자연의 원리로부터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 생물다양성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예 >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최근 수백 년간 약 1,000 배로 증가

지구의 삼림 생태계는 연간 약 73,000km² 씩 감소(일본국토면적의 약 5분의 1)

◆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계한 노력이 필요

미래에도 우리가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연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그 혜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기대되는 것 >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원료 조달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상품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 등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이어진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지구온난화 방지 등, 다른 환경문제의 해결로도 이어진다

◆ 국내외의 주요 동향

민간참여에 관한 결의 (2006년 3월 브라질(COP8))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민간참여의 중요성과 촉진에 관한 결의.

G8 환경장관회의 (2008년 5월 효고현 고베시)
'고베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촉구' 채택.

생물다양성기본법 (2008년 6월)
생물다양성 시책의 추진과 자연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

생물다양성협약 제 10회 당사국 회의(COP10) (2010년 10월 아이치현 나고야시)
전세계 191개국이 가입한 협약의 제 10회 당사국회의. COP10에서는 민간참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것

사업자는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연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을 촉진하는 등, 자연공생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자가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의 기본적인 인식

이념

- ①생물다양성의 보전
- ②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추진 방향

- ①사업활동과 생물다양성 간의 연관성(혜택과 영향)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 ②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사업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한다.
- ③추진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추진방법

- ①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힘쓴다는 자세를 보인다.
- ②실현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기본원칙

①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및 최소화

②예방적 노력과 순응적 노력※

③장기적 관점

고려 사항

- ①지역 중시와 광역 및 글로벌한 인식
- ②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와 배려
- ③사회공헌
- ④지구온난화 대책 등 그 밖의 환경대책 등과의 관련성
- ⑤공급망의 고려
- ⑥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 ⑦사업자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걸맞은 노력

참고 1 추진 방법의 참고 예

참고 2 사업자와 생물다양성 간의 관련성 파악 참고 예

참고 3 사업자의 주요 활동별 노력

참고 4 사회공헌활동

참고 5 구체적인 추진 사례

참고 6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문헌

참고 7 관련 참고정보

참고 8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예방적 노력: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대책을 미루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한다.

순응적 노력: 추진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 등을 유연하게 재검토한다.

생물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 검토회 개요

1. 위원 명단(이름순, 경칭 생략, ○:좌장, 소속은 2009년 8월 현재)

- | | |
|-----------------|--|
| 아다치 나오키(足立直樹) | 주식회사 리스폰스어빌리티 대표이사 |
| 이자와 아라타(伊沢あらた) | 주식회사 아미타지속가능경제연구소 교토연구소 소장 |
| ○가치 나오키(可知直毅) | 슈토대학동경대학원 이공학연구과 교수 |
| 다케모토 노리코(竹本徳子) | 도호쿠대학대학원 생태적응 GCOE 특임교수 |
| 다나카 히데카즈(田中秀和) | 스미토모임업주식회사 산림환경본부 환경경영부장 |
| 다니구치 마사야스(谷口雅保) | 일본경단련 자연보호협의회 기획부회 위원
세키스이화학공업주식회사 CSR부 환경경영그룹장 |
| 나가이시 후미아키(永石文明) | 도쿄농공대학 농학부 비상근강사 |
| 히비 야스시(日比保史) | 컨서베이션인터내셔널저팬 대표 |
| 마키노 가즈히코(牧野和彦) | 다이와증권그룹본사 CSR실 과장대리 |
| 미츠다 간나(満田夏花) | 재단법인 지구·인간환경포럼 전 주임연구원 |
| 야마다 요리유키(山田順之) | 가시마건설주식회사 환경본부지구환경실 과장 |
| 요시다 마사토(吉田正人) | IUCN 일본위원회 회장
에도가와대학 교수 |

2. 생물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 검토회의 경위

일정	명칭	내용
2008년 11월 10일	검토회 제 1 회 회의	가이드라인 시안 검토
2008년 12월 8일	검토회 제 2 회 회의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2009년 2월 3일	검토회 제 3 회 회의	가이드라인 안건(사무국 안건) 검토
2009년 3월 24일	검토회 제 4 회 회의	가이드라인 안건 검토
2009년 5월 13일 ~6월 12일	공중 의견 수렴	가이드라인 안건의 공중 의견 수렴
2009년 7월 24일	검토회 제 5 회 회의	가이드라인 결정